

[(주)케이아이엔엑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 IDC 이용약관

현재 약관	개정 약관
<p>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u>각종 IDC 서비스</u>(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 <u>됩니다.</u></p> <p>제4조 (용어의 정의) ② 서비스 : <u>고객이 회사 IDC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u> ⑥ 요금납부책임자 : <u>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u> ⑧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 <u>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서버를 판매 혹은 임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u></p>	<p>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u>IDC 서비스</u>(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 <u>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규정 또는 세부 이용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u></p> <p>제4조 (용어의 정의) ② 서비스 : <u>회사 IDC에서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및 부가, 추가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u> ⑥ 요금납부책임자 : <u>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채무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u> ⑧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 <u>회사 IDC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되는 서버를 전용으로 임대하고 임대된 서버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u></p>

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IDC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IDC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7.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8.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삭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및 철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추가\)등록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 [\(신설\)8.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설\)③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에라도 본 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설\)④ 회사가 이용승낙을 유보, 철회한 경우 이를 이용신청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였거나 기재된](#)

제 9조 (장비 설치)

-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Half랙, quarter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⑦ 회사는 고객 장비 설치가 본 전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주소 및 DNS)

-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할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고객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고객은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는 경우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용신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장비 설치)

- ③ 위 항의 기준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하프랙, 쿼터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⑦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주소 및 DNS)

-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할당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할당받아야 합니다.
- ④ 고객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IP주소를 회사 IDC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IP와 소통은 회사의 백본스위치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주소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고객은 자체 DNS(Domain Name System)가 없는 경우 회사의 DNS를 이용할 수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당 이용할 수 있는 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 측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12조 (회사 IDC 출입)

-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inx.net)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13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 (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있으며, 고객당 이용할 수 있는 도메인(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도메인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상 동작을 상호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제 12조 ((삭제)IDC 출입)

-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inx.net)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13조 (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제14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고객의 지위 승계)

-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 납부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서비스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제14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신설)단, 고객과 회사간에 이용계약 만료 및 해지관련 별도의 서면통보 조건을 합의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지위 승계)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위승계를 승인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등 제반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부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설)③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리를 본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⑥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 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 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 ⑦ 전항의 ~중략~ 협조를 통해 ~중략~ 사실 통보에 ~중략~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이동시킵니다. 이 경우 고객 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나 반출, 이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2.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삭제)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6.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51조 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 ⑤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 전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 ⑥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 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삭제)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관료는 상면 월 이용요금에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⑦ 전항의 ~중략~ 협의를 통해 ~중략~ 협조 요청에 ~중략~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회사가 임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⑧ (생략)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⑧ (생략)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체납요금, 가산금, 해지 후 반출일까지의 상면 이용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체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용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체납요금 등을 해지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체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⑩ ⑨항의 경우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 (의견 진술)

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에 게시함으로써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 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⑩ 고객장비의 반출·이동의 경우 회사는 (삭제)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삭제)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를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설) ⑩ 서버호스팅 이용고객 및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이용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회사가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고객의 요금체납으로 인해 회사가 직권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제 17조 (의견 진술)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위약금)

① 1.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2.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 4장 서비스 종류

제 19조 (제공 서비스)

① 코로케이션(Co-Location)

1. 회사 IDC 내의 초고속 인터넷 백본망에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 장비를 직접 수 용하여 연결함으로써, 기존 전용회선을 통한 서비스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하여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고, 고객의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 니다.

2. 회사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합니

제18조 (위약금)

① 1.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 도 표기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으로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약정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신설)3. 서버호스팅 및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이용고객의 경우, 또는 이용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 제공하는 서비스(전용회선, 전용상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약정 잔여 개 월 이용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 4장 서비스 종류

제 19조 (기본 서비스)

① 코로케이션(Co-Location)

1. 회사 IDC 내에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상면서비스와 회 사의 인터넷 백본망에 연결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게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2.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신청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 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합니다.

다.

4. Co-Location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별표 제1호(Co-Location 서비스 이용요금표)와 같습니다.

②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1.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회사 소유의 서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 상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고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비스 입니다.

제 20조 (부가 서비스)

①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회사 IDC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IDC 내에서 제공하는 기타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부가 서비스의 이용 내용,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 21조 (추가 서비스)

①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 IDC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2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회선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

4. (삭제)

②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1. 회사의 인터넷 백본망에 직접 접속된 전용서버를 임대하고 임대한 서버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임대한 서버에 대한 기술지원은 이용 고객과 회사간 별도 협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 20조 (부가 서비스)

①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회사 IDC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IDC 내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외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부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 21조 (추가 서비스)

①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기본, 부가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 IDC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2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장비 설치 서비스와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 또는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장비 및 설비를 회사 IDC의 내부에 구축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

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1회만 부과됩니다.

③ 회선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Rack 및 cage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회사의 건물 내에 설치된 회선사업자의 광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회선 공사 및 별도의 회선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제 23조 (IP 모니터링 서비스)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IP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통한 IP 모니터링 서비스를 합니다.

③ 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중 고객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서비스 불가상태 시(고객 측의 방화벽 설정 또는 회사가 접근이 불능 상태 등) (생략)

제 5장 요 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제19조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면 임대료 : 이용고객의 장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였을 때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요금
2. 접속료 : 회사 IDC에 설치된 이용고객 장비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사 IDC 백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요금
3. 장비 임대료 : 회사 IDC 내 이용고객이 회사 소유의 서버 또는 인터넷 접속 장

검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초기 설치 시 청구합니다.

③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는 (삭제) 회사 IDC 내에서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 회선, 크로스커넥트 회선, 구내회선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결하고 관련 공사를 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연결작업 및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초기 설치 시 청구합니다.

제 23조 (IP 모니터링 서비스)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IP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통한 IP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중 고객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서비스 불가상태 시(고객 측의 방화벽 설정 등으로 회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등) (생략)

제 5장 요 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제4장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 또는 별도의 회사 요금규정에 따릅니다.

1. 상면 이용료 : 이용고객의 장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였을 때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요금
2. 네트워크 이용료 : 회사 IDC내에 설치된 이용고객의 장비가 (삭제) 회사 IDC 백본망에 직접 접속하는 요금
3. 장비 임대료 : 회사 IDC 내에서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서버 또는 통신장비를

비를 대여하거나 할부 매입하여 사용하는 이용 요금

4. 초기 설치비 : 회사 IDC 내 고객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설치 비용

② 부가 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등의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25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으로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③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의 일 할로 산정합니다.

⑤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제 26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대여하거나 할부 매입하여 사용하는 요금

4. 초기 설치비 : 회사 IDC 내에 장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② 부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 및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25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이용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②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신설)④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26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①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의 요금계산방법은 제 25조 3항을 따릅니다.

제 27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8조 (요금의 납부 의무)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납부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9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②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산정합니다.

② (삭제)

제 27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설)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청구,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 28조 (요금의 납부 의무)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9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선납금)

②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신설)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이용요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상계처리 후 잔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30조 (납부 불이행)

-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 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10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 바대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의신청)

- ① 납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④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요금의 반환)

-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30조 (납부 불이행)

-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의신청)

- 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④ 회사가 이의 신청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요금의 반환)

-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합니다.
-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35조 (서비스 **유보**)

- ① (생략) 회사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 3.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 4.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②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 **요금**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④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6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37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 IDC와 고객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5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 ① (생략) 회사에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 3. **중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 4. **1년간** 1회만 신청 가능
- ②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중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 이용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④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6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37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9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 ① 제10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11장 손해배상 규정에 따릅니다.

제 7장 스팸 메일

제 40조 (스팸 메일 등의 정의)

- ① 스팸 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불법 스팸 메일이란 관계 법률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 메일을(생략)

제 43조 (스팸 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 ③ (생략)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제 39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 ① 제10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및 통신장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삭제)

제 7장 불법 스팸 메일 방지

제 40조 (스팸 메일 등의 정의)

- ① "스팸 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불법 스팸 메일"이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 메일을(생략)

제 43조 (스팸 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 ③ (생략) 그 결과를 해당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해당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제 46조 (스팸 메일과 관련된 책임)

②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한 스팸 메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8조 (회사의 역할)

③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제50조 (회사의 의무)

④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 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46조 (스팸 메일과 관련된 책임)

②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한 스팸 메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8조 (회사의 역할)

③ 회사는 **전자적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제50조 (회사의 의무)

④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삭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신설)⑧ 회사는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장비 셋업(Setup)을 대행해 주기로 고객과 별도 합의를 했을 경우, 해당 장비의 루트패스워드(Root Passwork)를 서비스 개통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해당 루트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루트패스워드를 통보 받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고객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신설)⑨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익과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제51조 (고객의 의무)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⑨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회사가 해당 장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51조 (고객의 의무)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 등이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회사와 별도로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⑨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삭제)
(신설)⑩ 고객이 운영, 관리하는 서버 등의 운영체제(OS) 및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에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신설)⑪ 고객은 회사와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장비 셋업(Setup)을 대행해 주기로 별도 합의했을 경우, 해당 고객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루트패스워드가 필요

제52조 (이용의 제한)

-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생략)
-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하므로 고객이 이를 변경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52조 (이용의 제한)

-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삭제) (생략)
-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삭제)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삭제)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8. (삭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신설)
- 19. 고객이 운영, 관리하는 특정 서버에서 서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여러 도메인 네임을 운영하거나, 회사의 IDC에서 전용서버를 이용하여 웹호스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9.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53조 (이용제한 절차)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 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11장 손해배상

제5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③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생략)

④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요금의 1일 평균액(단, 설치서비스 이용요금 제외)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20.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53조 (이용제한 절차)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망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삭제)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11장 손해배상

제5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생략)

④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요금의 1일 평균액(단, 설치서비스 등의 일회성 청구금액 제외)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신설)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IDC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

(생략)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IDC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 삭제 *IDC약관내 서버호스팅 내용 포함

(생략)